
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태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8391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8. 4.

발의자 : 김태흠 · 박준영 · 정유섭

권석창 · 김성찬 · 이양수

나경원 · 유기준 · 정성호

이주영 · 김현권 · 정인화

이군현 · 이개호 · 안상수

박남춘 · 위성곤 의원

(17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한국어촌어항협회는 「어촌·어항법」에 따라 1994년 국가설립 특수법인으로 출범했으며 2007년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음.

그러나 협회는 어촌·어항의 개발 및 관리, 관광 활성화 등 정부업무를 위탁·집행하는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협회라는 명칭으로 인해 이익단체로 오인되는 등 공공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.

따라서 기관의 명칭을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하고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려는 것임.

어촌·어항법 일부개정 법률안

어촌·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3호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·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1. 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
2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
3.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

제56조제3항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”으로 한다.

제57조의 제목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의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(이하 “협회”라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회는”을 “공단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협회의”를 “공단의”로 하며, 같은

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협회에”를 “공단에”로, “사단법인에”를 “재단법인에”로 한다.

④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 제목 중 “협회의”를 “공단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협회는”을 “공단은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9호 중 “협회의”를 “공단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회가”를 “공단이”로 한다.

제58조의2를 삭제한다.

제58조의3부터 제58조의10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8조의3(임원)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, 나머지 상임·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4(직원의 임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58조의5(자금의 조달 등)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
2. 제58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정부 외의자의 기부금
4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·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6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58조의7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)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제58조의8(지도·감독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·감독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·서류·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에 관한 사항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

3.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·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·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58조의9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58조의10(비밀엄수의 의무)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59조 중 “협회의”를 “공단의”로 한다.

제60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제58조의10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

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에”를 “제1항·제2항 및 제3항에”로 한다.

①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어촌어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

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본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가 행한 행위와 그 밖의 법률 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한국어촌어항공단이 행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(公簿)상의 한국어촌어항 협회의 명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명의로 본다.

④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재산과 권리·의무는 한국어촌어항공단 설립과 동시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를 포괄하여 승계한다. 이 경우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.

⑤ 이 법 시행 당시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직원은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임직원으로 선임되거나 임명된 것으로 본다.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한국어촌어항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한다.

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한국어촌어항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제4호 중 “한국어촌어항협회”를 “한국어촌어항공단”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및 어항개발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(2) (생 략)	(2) (현행과 같음)
제35조(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)	제35조(어항관리청 및 청항업무)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③ 어항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어항의 유지·관리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.</u>
	1. <u>제57조에 따른 한국어촌어항공단</u>
	2. <u>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기업</u>
	3. <u>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</u>
<u>③ · ④ (생 략)</u>	<u>④ · ⑤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)</u>
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	제56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· ②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③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7조에 따른 <u>한국어촌어항협회</u> ,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한국어촌어항공단</u>

수산업협동조합 또는 「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」 제3조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.

제57조(한국어총어항협회의 설립)

① 어촌·어항의 개발 및 관리,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, 관련 기술의 개발·연구, 관광 활성화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어촌어항협회 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설립한다.

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.

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신 설>

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제58조(협회의 사업) ① 협회는
제57조제1항에 따른 설립 목적
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

제57조(한국어춘어항공단의 설립)

② 공단은 -----.

③ 공단의

④ 공단의 설립과 등기에 필요
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
다.

⑤ 공단에 -----

----- 재단법인에 -----
-----.

제58조(공단의 사업) ① 공단은

업을 수행한다.	-----.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그 밖에 협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	9. ----- <u>공단의</u> ----- -----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	② ----- <u>공단이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58조의2(정관변경의 인가 등)	<삭 제>
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.	
1. 정관의 제정·개정에 관한 사항	
2. 협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	
3. 협회의 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	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.	
1.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	
2.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	
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의	

의결 등이 공익 또는 설립목적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제58조의3(임원) 공단에는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둔다. 이 경우 이사장은 상임으로 하고, 나머지 상임·비상임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제58조의4(직원의 임면)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.

제58조의5(자금의 조달 등) ① 공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달한다.

1. 정부 또는 정부 외의자의 출연 또는 보조금
2. 제58조에 따른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
3. 정부 외의자의 기부금
4.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수입금

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·관리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

<신 설>

정한다.

제58조의6(국유재산 등의 무상대

부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
단의 시설과 운영을 위하여 필
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국유재
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
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
다.

<신 설>

제58조의7(사업운영계획 등의 승
인)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
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
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
야 한다. 승인받은 사업운영계
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
에도 또한 같다.

<신 설>

제58조의8(지도·감독) ① 해양수
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
에 대하여 공단을 지도·감독하
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에는 그 업무·회계 및 재산에
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
소속 공무원에게 공단의 장부·
서류·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
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1.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련 법령
에 따라 공단에 위탁한 업무

에 관한 사항

2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

법률」 제50조에 따른 경영

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

3.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

립·집행 및 예산편성에 관한

사항

4.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

는 사항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

따른 지도·감독 또는 검사 결

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

발견한 경우에는 공단에 그 시

정을 명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도·감독 또

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

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

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
제58조의9(유사명칭의 사용금지)

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어촌어

항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

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58조의10(비밀엄수의 의무) 공

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

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

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

<신 설>

<신 설>

	<u>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</u>
제59조(별 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6 조제3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<u>협회의</u> 임직원, 수산 업협동조합의 임직원 및 한국 농어촌공사의 임직원은 그 업 무에 관하여 「형법」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 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	제59조(별 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) ----- ----- ----- <u>공단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0조(별 칙) ① (생 략)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 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. 1. ~ 6.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60조(별 칙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.
제62조(과태료) <신 설>	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제58조의10을 위반하여 직무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
① · ② (생 략)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	제62조(과태료) ① 제58조의9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 료를 부과한다. ② · ③ (현행 제1항 및 제2항 과 같음) ④ 제1항·제2항 및 제3항에---

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-----
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, 시·	-----
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	-----
이 부과·징수한다.	-----.